

FCC의 이들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규제의 완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게 될 경우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과거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개방성’이라는 특성에 맞도록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1] Jason Oxman, ‘The FCC and the Unregulation of the Internet’, OPP Working Paper No. 31, FCC, 1999. 7
- [2] “Internet prosper with ‘HANDS-OFF UNREGULATION’”, FCC News, 1999. 7. 19
- [3] “1999 Internet Economy Indicators”(http://www.internetindicators.com/featrees.html)

미국의 주간(Interstate) 접속료 인하 관련 동향

공정경쟁연구실 주임연구원 이진표
(T. 570-4142, lj@sunnet.kisdi.re.kr)

1999년 7월 1일부터 미국의 장거리전화 사업자가 부담하는 주간 접속료와 보편적서비스 비용의 총규모가 연간 8억달러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장거리전화 사업자가 부담하는 가입자회선당 정액접속료는 다소 증가할 수 있을지라도, 통화량에 따라 지불하는 분당요율은 상당히 감소될 전망이다. 장거리전화의 요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이러한 접속료의 변화는 장거리전화 요금을 인하시키고, 장거리전화 이용을 활성화시키며, 경제 전환을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FCC의 W.E. Kennard 의장은 “주간 접속료 인하와 보편적서비스 비용 감소에 따른 장거리전화 사업자의 비용절감은 장거리전화 요금 인하로 연결되어, 가입자가 접속료 인하의 궁극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그는 “만약 가입자 통화요금의 인하를 수반하지 않는 가입자 정액요금의 인상이 있을 경우, 가입자들은 사업자 변경을 희망할 것이고

심지어 사업자 사전선택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FCC는 ‘가입자가 자신의 장거리전화 요금을 낮추는 몇가지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주간 접속료는 장거리전화 사업자가 장거리전화의 발·착신을 위해 시내전화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며, 보편적서비스 기금은 농촌과 같은 고비용지역에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학교, 도서관, 농촌 의료시설에 인터넷 접속을 포함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보조하는 데 사용된다.

시내전화 사업자들은 6월 16일 FCC에 주간 접속료 인하와 관련된 새로운 접속요금표 (tariff)를 제출하였으며, 이 접속요금표는 FCC의 검토를 거쳐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하게 된다. 1998년 수요를 기준으로 작성된 시내전화 사업자별 접속료 인하 추정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시내전화 사업자별 접속료 인하 추정액

(단위: 천달러)

사업자	접속료 인하 추정액	사업자	접속료 인하 추정액
Ameritech	87,700	Aliant	1,800
Bell Atlantic	234,600	Frontier	5,900
Bell South	150,000	SNET	16,100
Pacific Telesis	55,600	Sprint LTCs	44,500
Southwestern	60,800	Citizens	9,200
US West	109,100	Cincinnati Bell	4,900
GTE	44,600	Total	824,800

참고자료:

- [1] “Access Charges Cut: Lower Long-Distance Rates Should Follow”, *FCC News*, 1999. 6. 29.
- [2] 47CFR Part61 Tariffs, 1997. 10. 1.